



창업과 윤리경영

Chapter 6 – 창업기업의 설립



OVERVIEW

- 기업형태의 결정
-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특성, 장단점
- 기업의 설립절차



제1절 기업형태의 결정

1. 기업형태 결정의 중요성

(창업 기업 형태)

- 기업경영을 책임질 한 사람이 감당하는 **개인기업** 형태의 창업
- 조직을 갖추어서 회사업무의 대부분을 능력 있는 종업원에게 분산시켜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법인** 형태로 창업



제1절 기업형태의 결정

1. 기업형태 결정의 중요성

(최근 기업환경의 변화)

- 60~80년대에 사장의 경영 능력에 따라 경영이 가능
- 국내 경쟁업체도 많지 않았으며, 제품이 만들어지면 큰 판매활동 없이도
순조롭게 매출 신장되고, 마진폭도 컸던 시대
- 그러나 최근의 기업환경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기업 형태의 결정은 창업에 있어 중요한 요소
- . - 보다 좋은 환경, 보다 좋은 복리후생제도, 여가시간이 많은 직장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변화
- 세계의 모든 기업이 경쟁대상 기업
- 시장의 개방



제1절 기업형태의 결정

1. 기업형태 결정의 중요성

(기업형태 결정의 중요 요소)

- 모든 상황에 따라 **경영자의 능력과 조직의 필요에 따라** 회사 형태를 결정해야 함
-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은 법률상 주식회사로, 운영은 가족형태로 경영**하는 경우 많음
- 자본과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지만,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정부는 이를 권장하여 기업이 필요한 자본을 널리 일반인들로 부터 모집하여 현대적 개념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상법, 증권거래법, 세법상** 각종 혜택을 주어 이를 장려
- **장단점을 상호 비교하여 자기 실정에 맞는 기업형태를 선택**하면 됨

제1절 기업형태의 결정

2. 기업형태 결정기준

- 창업자의 특수한 사정이나 선호하는 경향과 성격에 따라 두 형태 중 한가지 형태로 회사를 설립하면 됨
- 절세효과가 어느 쪽이 더 큰지 비교 평가 후 선택
- 과세표준은 이익에 따라 달라짐으로
세제 정책상 개인기업보다는 법인기업이 더 유리
- 소득규모, 누적 결손을 보전하고 이익실현이 가능한지를 판단하여 기업형태 결정 기준

제2절 개인기업과 법인가업간의 비교

1. 개인기업과 법인가업의 장·단점

구분	개인기업	법인가업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윤 전부를 기업주가 독점할 수 있음 - 설립등기가 필요 없고,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개시가 가능하므로 기업설립이 용이 - 창업비용과 창업자금이 비교적 적게 소요되어 소자본을 가진 창업자도 창업가능 - 일정규모이상으로는 성장하지 않는 중소 규모의 사업에 안정적이고 적합함. - 기업활동에 있어 자유롭고, 신속한 계획수립, 계획변경 등이 용이 - 개인기업은 인적 조직체로서 제조방법, 자금운용상의 비밀유지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가능한 유망사업의 경우에 적합 - 주식회사는 신주발생 및 회사채발행 등을 통한 다수인으로부터 자본조달이 용이 - 대표자는 회사운영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지며 주주는 주금 납입을 한도로 채무자에 대해 유한책임을 짐 - 사업양도시는 주식을 양도하면 되므로 주식양도에 대해 원칙적으로 낮은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또한 주식을 상장 후에 양도하면 세금이 없음 -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영업수행과 관공서,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유리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며,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므로 기업의 계속성이 단절됨 - 사업 양도시에는 양도된 영업권 또는 부동산에 대하여 높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절차가 복잡, 최소한 100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설립이 가능 - 벤처기업의 주식회사 설립시 자본은 2천만원 이상 임 -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용으로 사용하면 회사는 대표자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하는 등 세제상의 불이익이 있음

제2절 개인기업과 법인기업간의 비교

2. 세제상의 특징 비교

구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과세근거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과세기간	매년 1월1일~12월31일까지	정관에 정하는 회계기간
과세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익금의 총액-손금의 총액
과세범위	특정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만으로 분리과세	분리과세가 인정되지 않음
이종과세 여부	하나의 원천소득에 대해 이종과세가 되지 않음	법인에게 법인세 과세후, 주주의 배당에 대해 소득세 과세
세율구조	세율: 6~38%로 누진적용 주민세: 소득세의 10%	세율: 10% ~22% 27% 주민세: 법인세의 10%
납세지	개인기업의 주소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 주사무소
기장의 의무	수입금액에 따라 일기장의무자, 간이장의무장,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
외부감사제도	적용되지 않음	자산총액이 60억 이상인 경우,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음
대차대조표 공고	대차대조표 공고 의무가 없음	법인세 신고기간 내에 일간신문에 공고의무가 있음(외부감사 대상법인)

제3절 개인기업의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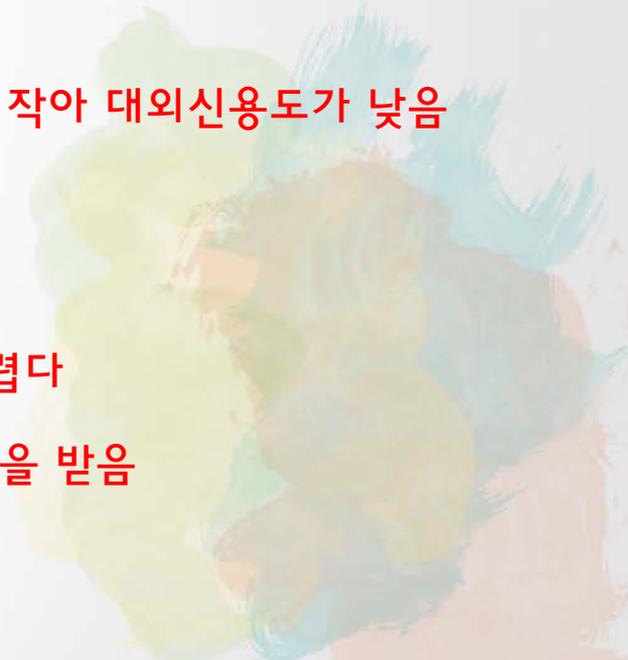
1. 개인기업의 특성

(장점)

- 개인 단독 출자하여 만든 기업으로 **소유와 경영이 일치**
- 기업이윤 독점
- 경영도 개인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경영 가능
- 기업비밀을 확실히 유지 가능, 법적 제재가 많지 않으므로 자유롭다는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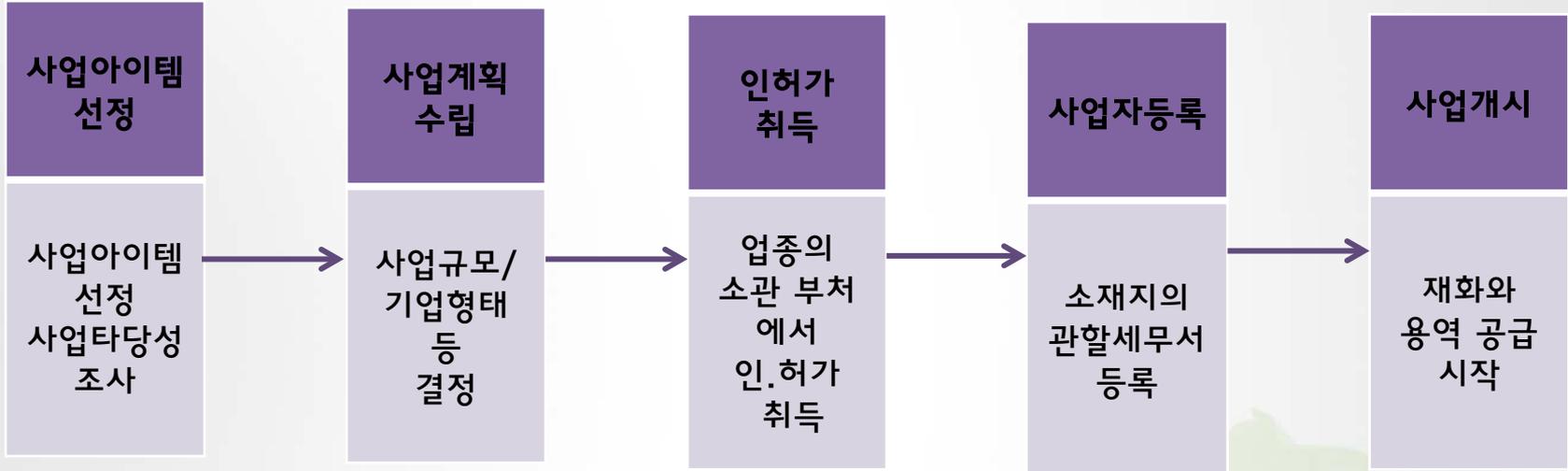
(단점)

- 개인기업은 한 개인의 자본금만으로 운영되므로 **기업규모가 작아 대외신용도가 낮음**
- 독단적 경영으로 **경영위기에 대처하기 힘들다**
- **합리적 경영이 어렵고**
- 이익금을 자유롭게 사용함으로 인해 **기업의 실체 파악이 어렵다**
- **기업주의 신상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곧바로 기업에 영향을 받음**



제3절 개인기업의 설립

2. 개인기업의 설립절차



- (1) 인허가 취득(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업종에 한함)
- (2) 사업자 등록(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신고)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업인허가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업허가전 등록 시 사업허가신청서나 사업계획서, **2인 이상 공동사업경우 공동사업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동업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교부 7일 이내
- (3) 사업개시 및 신고사항
 - 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의 작성, 취업규칙작성 신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신고 등 신고

제4절 법인가업의 설립

1. 법인가업의 특성

(장점)

- 다수의 출자자가 참여하는 기업형태로 **대형자본 동원 가능**
- 기업의 문제가 **개인가정의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 **자본과 경영이 분리**로 인해 합리적 경영 가능, 대외신용도가 높음
- **외상 거래 및 외부자금 차입이 용이**
- 기업의 실체 파악이 용이, 사장의 유고 시 즉각 대처 가능

(단점)

- 책임의 한계가 모호
- 기업의 비밀유지 어렵고
- 법적 및 사회적 제약요소가 많고
- 임기응변의 경영이 불가능하다는 단점
- 절세와 이익금에 대한 운신의 폭이 좁다



제4절 법인기업의 설립

1. 법인기업의 특성

1) 주식회사

- 자기가 인수한 주식의 금액을 한도로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질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주주로만 구성되는 회사
- 자본, 주식 및 주주의 유한책임

2) 유한회사

- 주식회사와 기능 비슷, 발기인 2명 이상 50명 이하
- 자본 1천만원 이상
- 가족형 법인형태
- 설립수속이 간단, 경영상태 공개할 의무가 없다



제4절 법인기업의 설립

1. 법인기업의 특성

3) 합명회사

- 2인 이상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회사
- 사원의 개성이 중시되는 기업형태
- 현실적으로 구성원수가 그렇게 많은 경우는 별로 없다
- 사원 모두가 무한 책임, 소유와 경영이 분리될 수 없음
-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라면 이런 형태의 법인 형태를 설립해보는 것도 무방

4) 합자회사

- 발기인 수 2인 이상, 합명회사와 모든 면이 비슷
- 인적요소가 강한 법인형태
- 무한 책임과 유한책임사원 2분류의 사원으로 구성



제4절 법인가업의 설립

2. 법인가업의 설립과 절차

1) 주식회사의 설립 개요

-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2가지
- 발기설립은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법인설립사항을 조사하고 법원에 결과 보고
- 설립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
- 모집설립방법 선호
- 주주로만 구성되는 회사
- 3인 이상의 발기인이 발기인 조합을 구성하여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작성, 주식인수 및 주금 납입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법원에 설립등기
- 소기업 창업인 경우 1인 이상 발기인과 5천만원 미만으로 설립 가능

제4절 법인기업의 설립

2. 법인기업의 설립과 절차

2)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

① 발기인 구성

-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중인 회사의 구성원, 설립업무의 집행기관
- 발기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 내국인, 외국인, 법인이든, 개인이든 관계 없음
- 미성년자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발기인이 될 수 있음
- 발기인수는 3인 이상,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는 3인 미만 되어도 관계가 없음
- 1인이 되어도 회사는 해산되지 않음

제4절 법인가업의 설립

2. 법인가업의 설립과 절차

2)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

② 정관작성 및 공증

- 정관은 형식적으로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규칙을 기재한 서면
- 회사의 조직과 활용에 관한 기본 규칙
- 회사의 제규정, 이사회규칙, 급여 및 인사규정, 회계규정, 생산 및 품질 관리규정 등 회사의 모든 규정 중 최상위의 기본 규칙



제4절 법인가업의 설립

2. 법인가업의 설립과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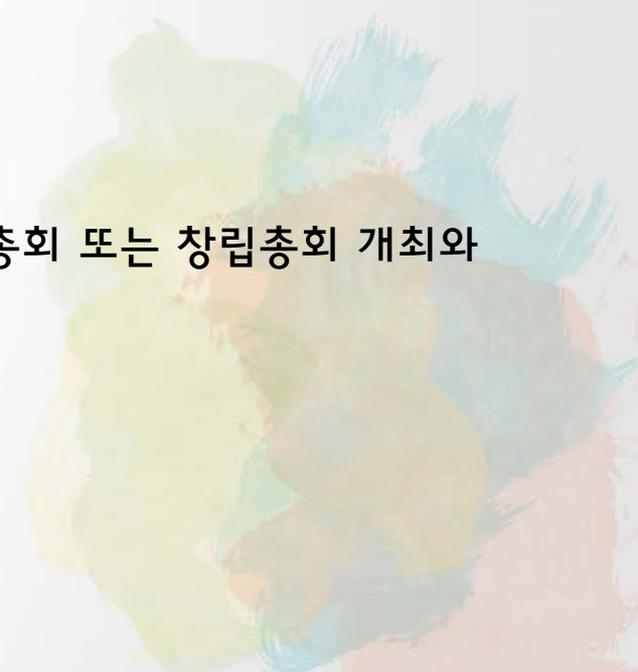
2)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

③ 주주 확정 및 출자의 이행

- 회사 설립 기본계획에 의거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 결정
- 각 방법에 따라 주주 결정
- 소정절차에 따라 출자를 이행

④ 발기인 총회, 창립총회 개최 및 경과 조사

- 주식회사 설립절차상 내부의 최종 절차가 바로 발기인 총회 또는 창립총회 개최와 설립경과의 조사



제4절 법인가업의 설립

2. 법인가업의 설립과 절차

2)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

⑤ 법인설립등기

- 회사 설립등기를 해야만 완전한 회사설립절차가 완료됨
- 2주 이내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등기**

⑥ 법인 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

